

< 안전성검사기관 업무규정 작성지침 >

1. (품질문서) KSQISOIEC 17025(시험 및 교정기관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를 참고하여 작성

- 공정성, 기밀유지, 조직도 및 조직운영, 인원운영, 시설 및 환경조건, 장비관리, 측정소급성, 의뢰·입찰 및 계약의 검토, 기술기록관리, 결과 보고, 경영검토 등 KSQISOIEC 17025 요구사항

→ KSQISOIEC 17025표준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가능

2. 안전성검사업무 절차서

- 안전성검사대상제품의 신청서 접수 → 제품검사 → 검사결과서 발급 등 안전성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절차를 구체화하고, 단계별 관련 서식, 접수·보관서류, 내부 절차서 등을 구체화하여 업무규정에 반영

* 업무규정에는 안전성검사 관련 법령, 운용요령, 지정 및 심사가이드에서 규정한 사항(절차, 서식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통해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요령, 가이드 등 다운로드 가능

3. 재사용전지 검사업무(KC 10031) 절차서

- KC 1003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업무 수행 절차서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통해 안전기준 다운로드 가능

하나 반드시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안내하는 절차 (규칙 제55조의 5, 제8조)와 관련 기록 보관 절차를 규정

제55조의5(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성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2 제품검사

※ 제품검사는 KC 10031 안전기준을 반영하여 기관별 지정품목에 따른 세부 절차(재사용 전지 검사업무 절차서) 규정

□ 제품검사 준비

- 신청품목 범위(모듈, 시스템) 확인, 검사인력 배정, 안전기준 확인, 검사장비 보유 및 교정상태 확인, 시료확인, 외부 검사 의뢰 등 세부 절차 규정
- 안전기준 확인 관련해서 아래 안전기준 적용 시점 관련 규정도 반영

운용요령 제63조(안전기준의 적용)

③ 전기용품안전기준 적용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안전성검사를 신청한 날

4. 규칙 제20조, 규칙 제37조, 규칙 제48조 또는 규칙 제55조의8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안전성검사의 표시가 있는 전기용품은 제품 제조연월에 유효한 안전기준

□ 제품검사 실시

- KC 10031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대상품목(모듈, 시스템), 검사기법(전기적검사, SW), 검사기법별 검사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
- 재사용전지모듈 일련번호 부여
- 사용후전지 정보 및 사양 재정의 확인
- 외관검사 방법 및 기록

- 전기적검사 절차 및 기록

종류		검사 항목		검사 대상		
		검사		재사용전지 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품질 및 성능 요구사항	사전 검사	6.2.1 일련번호 부여 및 기록		전수	—	
		6.2.2 정보		전수	—	
		6.2.3 외관 검사		전수	—	
	전기적 검사	6.3.1 개방회로전압(OCV)		전수	—	
		6.3.2 절연 검사		전수	—	
		6.3.3 용량 검사		전수	—	
		6.3.4 내부 저항 검사	6.3.4.1 내부 a.c. 저항		전수	—
			6.3.4.2 내부 d.c. 저항		전수	—
6.3.5 자가방전 검사		전수	—			
전지시스템 안전(기능 안전성 검토) 요구사항	7 기능 안전성 검토		—	모델별 1		
	과충전 전압 제어		—			
	과충전 전류 제어		—			
	과열 제어		—			
“—”= 불필요 또는 적용되지 않음.						
비고 재사용전지모듈 검사 시 S/W 검사기법을 통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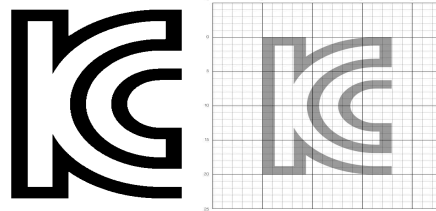
* SW검사기법에 대한 별도 업무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검사기관은 SW검사기법 활용 불가

○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시 1회에 한해 보완할 수 있는 절차 규정
(재사용전지시스템을 신청한 검사기관에 한정)

<p>운용요령 제56조의3(안전성검사 제품의 보완)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재사용전지시스템에 대한 검사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해당 전기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재사용전지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적합 검사결과서를 발급하여 동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안전성검사 업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p>
--

□ 안전성검사 표시사항

- KC마크 도안, 안전성검사번호 등 검사대상 제품에 표시하는 사항 규정
 - 전안법 시행규칙 별표 제9호, 운용요령 제57조 및 별표 제23호, 안전기준 KC 10031 제9절 참고



안전성검사번호:

1. KC 마크 및 안전성검사번호
2. 제품명
3.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
4. 제조업체명
5.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6.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 ① 재사용전지모듈 : 안전성검사기관이 재사용전지모듈 전수검사 후 아래의 내용을 제품에 표시한다.
 - a) 안전기준(KC 10031) 6.3.3.에 따른 측정용량
 - b) 모델 번호, 일련 번호, 검사일자
 - c) 재사용제품 문구 (예: 본 제품은 재사용 제품입니다.)
 - ② 재사용전지시스템 : 제조자가 제품 출고 전 모든 표시, 명판, 모델, 상표(외장형 및 내장형 배터리 모듈 및 셀)를 제거하고 아래의 내용을 제품에 표시한다.
 - a) 배터리 제조자 이름 또는 ID
 - b) 정격 용량, 정격 전압
 - c) 제조일자
 - d) 재사용제품 문구 (예: 본 제품은 재사용 제품입니다.)

□ 안전성검사서

- 안전성검사결과에 따른 안전성검사서 발급, 수수료 등의 절차 규정
 - 기술책임자, 실무자 역할 규정

[별지 제26호서식] 안전성검사서 <신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접수번호 :
 안전성검사서		
안전성검사번호 :		
보험 또는 공제가입번호 :		
제조업자명 :		
주 소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명 :		
정격/안전기준상의 전기용품구분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수량 또는 크기 :		
안전기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6에 따라 안전성검사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 전 성 검 사 기 관		직인
<small>※ 이 신고증명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한정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 또는 공제 보장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9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small>		

4 기타

□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운용요령 별지 제4호, 제5호)

- 안전성검사기관에 발급하는 수출용 사실확인증명서 관련해서 사실확인신청서, 사실확인증명서 관련 처리 절차 규정

■ [별지 제4호서식]

사실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 신청업체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② Name of product(제품명)		
③ Nature of the industrial products (제품의 유형)		
④ Quantity(수량)		
⑤ Notification No (인증, 신고 또는 검사번호)		
⑥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제조회사명 및 주소)		
⑦ Country of destination (도착국)		
⑧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수출업체명 및 주소)		
⑨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수입업체명 및 주소)		
⑩ Remarks(비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실확인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장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또는 안전성검사기관) 귀하 ※ 구비 서류 ① 안전인증대상제품 : 안전인증서 사본 1부. ② 안전확인대상제품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사본 1부.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성적서 사본 1부. ④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 안전기준준수 시험성적서(시행한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⑤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 안전성검사서 사본 1부. ⑥ 수출(입)계약서 또는 수출매도계약서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검수	검토 및 확인
신청인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
		사실확인서 작성
		사실확인서 발급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

210mm×297mm(복합지 80g/㎡) 또는 중량지 80g/㎡

■ [별지 제5호서식]

Serial No :

CERTIFICATE OF CONFORMITY

TO WHOM IT MAY CONCERN :

MM/DD/YY

The Safety Certification Body (or The Safety Test Body)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freely sold without any restriction under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Name of product	Name of model	Notification No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Country of destination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Remark :

Sincerely Yours,

Safety Certification Body (or Safety Test Body)

Official Seal

210mm×297mm(복합지 80g/㎡) 또는 중량지 80g/㎡

□ 장비관리

- 검사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검사설비, 사용환경, 교정주기 등 별도 지침서 마련

< KC 10031 부속서 A >

대상	검사 항목		검사설비 또는 검사자격
	검사		
재사용 전지모듈	6.3.1 개방회로전압(OCV)		직류전압측정기, 항온실
	6.3.2 절연 검사		절연저항측정기, 항온실
	6.3.3 용량 검사		충방전설비, 항온실
	6.3.4 내부 저항 검사	6.3.4.1 내부 a.c. 저항	충방전설비, 내부저항측정설비, 항온실
		6.3.4.2 내부 d.c. 저항	
	6.3.5 자가방전 검사		충방전설비, 직류전압측정기, 항온실
재사용 전지시스템	7 기능 안전성 검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 (KC 62619의 8절 항목 적용)
	과충전 전압 제어		
	과충전 전류 제어		
	과열 제어		

기록보관

- 안전성검사 신청접수부터 안전성검사서 발급시까지의 관련 기록 보관에 관한 별도 절차 규정

시료보관 및 폐기절차

- 검사신청 시료 보관 및 검사 부적합시 해당 제품 폐지에 따른 처리 절차 규정